#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9

발의연월일: 2024. 6. 19.

발 의 자:정을호·복기왕·안도걸

서삼석・조 국・진성준

신영대 · 조정식 · 문정복

김윤덕 · 신정훈 · 김문수

백승아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,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그 금리는 「국채법」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"120퍼센트"에서 "110퍼센트"로 하향함으로 써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것임(안 제11 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2항 후단 중 "120퍼센트"를 "110퍼센트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대출 금리) ① (생 략)	제11조(대출 금리) ① (현행과 같
	음)
②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	②
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	
과 실질금리, 대출원리금의 상	
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	
금리를 감안하여야 한다. 이 경	
우 그 금리는 「국채법」에 따	
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	
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	
간 평균수익률의 <u>120퍼센트</u> 를	<u>110퍼센트</u>
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	